의과대학생 학술교류 기준

제　정 2014. 7. 1.
개　정 2023. 9. 1.

제 1장　의과대학생 학술교류

제1조 (목적) 의과대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국가의 임상의학교육을 체험하며, 의과대학과 병원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술교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해외교환학생 파견

제2조 (정의) 해외교환학생이란 본교와 상호 협정을 체결한 해외기관에 파견하여 임상실습이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파견기간) 해외교환학생은 선택실습기간이나 방학기간에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한다.

제4조 (파견인원 및 체제비) 파견인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정서에 명시된 인원수를 준수하며, 체제비는 협정서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규정 및 규범 준수) 해외교환학생은 파견기관의 규정과 규범을 준수하고, 본교와 파견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6조 (신청대상 및 선발기준) 해외교환학생 신청대상은 의학과 5학년으로 제한하며, 선발기준은 영어자기소개서(CV) 및 실습계획서, 학교성적, 영어에세이 성적, 영어인터뷰 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제7조 (장학금 지원) 선발된 해외교환학생에게는 항공료 범위내 일정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 (실습계획서 및 평가서 제출) 선발된 해외교환학생은 출발전 실습계획서를 제출하고, 귀국후 지도교수의 영문평가서를 제출한다.

제9조 (파견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해외교환학생은 파견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권사본, 예방접종확인서, 여행자보험, 영어자기소개서(CV) 실습요청과 등)

제3장 자체교류 프로그램

제10조 (정의) 자체교류 프로그램이란 IFMSA(Inter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Associations)에서 주관하는, 학생들이 계획한 4주 과정의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SCOPE(임상실습교환)과 SCORE(연구실습교환)를 말한다.

제11조 (실습기간) 자체교류 프로그램은 선택실습기간이나 방학기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습기간은 4주로 한다.

제12조 (교환인원 및 체제비) 차기년도 교환인원은 당해연도에 확정하며, 상호교환계약 방식에 따라 보내는 인원수와 받는 인원수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버디학생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버디활동비 및 문화교류활동비를 지원하며, Outbound SCORE, SCOPE 참가학생에게는 100만원이내에서 항공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단, Outbound SCORE, SCOPE 참가 학생은 5학년 이하로 제한한다.

제13조 (규정 및 규범 준수) 자체교류 프로그램 참가학생은 파견기관의 규정과 규범을 준수하고, 본교와 파견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4조 (비용 부담) 자체교류 프로그램 Inbound 참가학생에게 비용(숙박비, 식비, 교육비)등을 받지 않는다.

제15조 (파견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자체교류 프로그램 참가학생은 파견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어자기소개서(CV), 신청서 등)

제4장 선택실습

제16조 (정의 및 실습기간) 선택실습이란 의학과 5학년과 6학년에서 수행하는 실습으로, 선택실습1은 의학과 5학년 필수 교육과정(4주 4학점)이고, 선택실습2~5는 의학과 6학년 선택교육과정(2주, 2학점)이다. 선택실습은 선택실습기간이나 방학기간에 수행할 수 있으며, 실습기간은 각각 4주와 2주로 한다.

제17조 (모듈 심의 및 확정) 각 부서에서 신청한 선택실습1은 5월, 선택실습2~5는 12월까

지 선택실습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제18조 (피드백 및 E-포트폴리오 제출) 선택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은 매주 선택실습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받아야 하며, 실습종료 후 E-포트폴리오를 기간내에 제출한다.

제19조 (외부 실습 평가표 전달 및 수령) 원외 및 해외실습인 경우 의과대학 교학팀은 실습요청 학생의 외부 실습 평가표를 전달하여 실습마치는 기간에 받는다.

제20조 (외부 실습 서류 제출) 원외 및 해외실습인 경우 다음서류를 선택실습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자 승낙서(원외실습기관 지원 서약서)/ 지도교수의 선택실습 신청서
2. 실습계획서
3. 파견기관 초청장 or 인턴쉽 승인서 및 수료증명서 (해외파견시)
4. 여행자 보험등과 같은 보험 가입 증서 (해외파견시)

제5장 타 대학교 학생의 본교 수학

제21조 (정의) 타 대학교 학생의 본교 수학이란 본교와 MOU 협약이 체결된 기관 또는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습요청을 한 학생이 본교에서 임상실습이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단,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관의 실습요청은 다음의 경우만 인정하며, 아카데미팀에서 심의후 허가여부를 확정한다.

1. 타 의과대학의 공문 요청시
2. 학장추천서 제출시

제22조 (체제비 및 교육비) MOU가 체결된 기관에서 실습요청시 실습학생은 실비기준의 체제비(식비,숙박비)를 부담한다. 단 상호교환방식 및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 이를 우선한다.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관에서 실습요청시 실습학생은 실비기준의 체제비와 교육비를 부담한다. 교육비는 1일 기준 10,000원 이상으로 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과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위원회에 승인을 얻어 시행 한다.